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안 제4조～제7조)

경계변경 신청 사유 및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 요구 절차,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및 협의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 함

나.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관련(안 제12조, 제120조～제123조 및 별표3, 4)

1)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 함.

2)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및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특례를 열거 함.

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 정비(안 제13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의 의미 명확화 및 용어를 정비 함.

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안 제14조～제35조)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른 조례제·개폐청구 관련조문을 정비 함

마.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안 제14조～제35조)

1)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과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함.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 도입 및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을 개선 함.

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안 제14조～제35조)

1)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여비 제외 및 여비 지급기준을 신설 함.

2) 현행 법률 규정사항인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정례회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 함.

사.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안 제38조)

명칭(정책지원관) 및 직무범위(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연구 지원), 배치형태(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 임용절차(임용령 규정 준용) 등을 규정 함.

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현행 제63조, 제63조의2, 별표7의2 삭제)

1)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임용권 위임범위 규정을 삭제 함.

자. 통장의 임명 근거 마련(안 제83조)

지방자치법에 통(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을 명시 함.

차.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안 제85조)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가능 구간을 확대 함.

카.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안 제114조～제117조)

시·군·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의 보충적 개입 시 행안부장관에 대한 통보·보고규정을 정비 함.

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체화(안 제124조～제125조)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함(특별자치단체의회 의결안건 중 특별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사항 등)

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규정 정비(안 제10조～제11조 관련 별표1, 2)

1) 자치단체별 사무 예시에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 함.

2) 자치단체 사무로 국제교류·협력이 신설됨에 따라 시·도, 시·군·구 사무를 예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없　　음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2.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로, 하천 등으로 기존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이 경우 기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사업 착공 전에 경계변경 필요성을 명시한 신청서,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계변경 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한 경우에는 위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시·군·구 관할 시·도 소속 공무원
2. 관계 시·군·구 관할 시·도 의회 의원
3. 관계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군·구 의회 의원
5.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대상에 관한 사항
2. 경계변경의 일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의기간 연장 사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경계변경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기한 내에 협의를 마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 읍·면 또는 동

제9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가 추가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4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이하 "자치분권 사전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이념
2.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및 사무배분 기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검토의견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 대상 사무와 이유 등을 적은 주민감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8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6조(전자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대표자증명에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을 포함한다.

⑤ 전자서명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7조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이하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청구요건 심사)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1조(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 이 영 제18조제2항,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6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3항, 이 영 제18조제2항,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7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위원을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14조에 따른 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 신청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5조에 따른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7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조례와 규칙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3조(공고와 고시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영 제33조에 따른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5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의회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7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61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41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42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5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8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1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89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63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5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와 법 제120조 또는 법 제121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22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

(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3.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83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제84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7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

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제91조(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92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4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7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8조, 제89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9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100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101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102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4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84조와 제185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8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9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1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3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89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4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3.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명령·처분에 대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4. 법 제18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5. 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5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8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
4. 법 제18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하거나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대집행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6. 법 제189조제6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제116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 법 제120조제1항 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20조제3항 및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7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8조(판결 등의 공시) 제116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119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0조(지정기준) 법 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군·구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시·군·자치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2. 해당 시·군·자치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제121조(지정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시·군·구와 해당 시·군·구가 신청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2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군·구가 지정된 경우, 지정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를 위해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시·군·구 특례 협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시·군·구 특례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각각 동수로 하고,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시·도 소속 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제7항에 따른 시·도-시·군·구 특례 협의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운영하되, 시·도와 시·군·구의 협의를 통해 운영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시·군·구 특례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요청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⑨ 그 밖의 지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 심의위원회)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0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 교육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인, 법제처차장
2.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추천한 자 4명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광역시·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⑫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3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특례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10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제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는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2항에 따른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4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5조(사무처리 상황 통지방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7조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통지하려면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지방자치법」 제179조" 로 한다.

②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③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조 제2항3호 중 제165조제1항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 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또는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⑤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106조”로 한다.

⑥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114조”를 “「지방자치법」 126조 및 127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하고,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⑧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조 제1항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⑫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⑮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⑯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⑰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⑳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2호 중“「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㉒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㉓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한다.

㉔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㉖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

법」 제104조” 를“「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㉗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지방자치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㉘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같은법 제126조”로 한다.

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㉚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㉛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으로 한다.

㉜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자목 중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을“「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㉞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지방자치법」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
로 한다.
㉟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㊲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3호”로 한다.
㊳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㊴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으로 한다.
㊵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으로 한다.
㊶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㊷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조”를 “「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㊺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㊻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하고, 제37조제3항제1호 중“「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㊽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㊾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지방자치법 」 제185조,제190조 및 191조”로 하고,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지방자치법 」 제185조,제190조 및 191조”로 하며, 같은조 1호“「지방자치법」 제167조제1항”은“「지방

자치법 」 제185조제1항, 같은조 2호“「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 제185조제2항,같은조 3호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 제190조제1항”으로 한다.

㊿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 및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68조·제102조 및 제125조”로 하고,제2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같은조 6호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 제127조”로, 같은조 7호“「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 제128조”로, 같은조 10호 “「지방자치법」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9조”로 한다.

52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지방자치법 」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5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지방자치법 」 제182조”로 하고, 제21조의2제3호 중“「지방자치법」 제165제1항을“「지방자치법 」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하고, 제35조의7제1항1호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지방자치법 」 제150조제1항”로 하며, 제133조제2항”을“「지방자치법 」 제149조제2항”,“「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지방자치법 」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5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지방자치법」 제165제1항”을“「지방자치법 」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6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지방자치법 」 제117조제3항”으로 하고, 제6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 제182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지방자치법 」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57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 로 한다.

5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59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1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지방자치법」 제113조 또는 114조”를“「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127조”로 한다.

6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제17조 중“「지방자치법」 제175조”를“「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 관련)

구 분	시 · 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례보조비 지급 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

		(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라..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 청소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청소년복지 지원 23)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사업계획 수립·시행 19) 청소년보호 조치 20) 청소년복지 지원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보건교육 지도·감독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교육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3) 전염병 예방대용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용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5) 분묘의 일제신고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6) 시체운반업 허가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차. 청소·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4)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6)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생활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7)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통보·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운영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농업자재의 관리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통보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융자금 관리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바. 공유림관리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신고 수리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4)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특수조림지 관리	5) 산림병충해 방제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종축장 운영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보호종축의 지정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가축 개량·증식·보호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아. 가축전염병 예방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파.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수립·시행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2) 우수지역특산품 등의 개발·보급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3) 지역특산품 전시관 운영

	4) 우수지역특산품 개발·보급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지역특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3)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는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3)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군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4)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군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라.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시도·군도·구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도·군도·구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시도·군도·구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도·군도·구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통보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7) 광고물 정비·단속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바. 농어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7)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사. 자연보호 활동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자갈채취단속 등)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리 6) 하천감시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	1)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조	1)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치 및관리	정 2) 소규모급수시설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2) 소규모급수시설사업장 선정 3) 소규모급수시설공사의 지도 4)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쇄 결정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6) ~ 10) < 삭제 >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6) ~ 13) < 삭제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녹지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관리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2) 관광휴양지의 관리	1) 관광자원 개발·보존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3) 관광휴양지의 관리 4)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하.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

		립·운영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 보존 및 관리	1) 시·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 지정·등록문화재의 반출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7.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공통된다	
가.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1)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운영 2) 국제기구·행사·대회 운영경비의 지원	
나.외국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행사 유치·개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1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

4.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가.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나. (삭제)

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

라. 도시·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마.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사. 도시·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아.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가.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다.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2조 관련)

1.「주택법」 제15조 및 제71조에 따른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고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8조, 제52조의2, 제88조, 제91조,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실시계획 고시, 공사완료 등 공고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9조, 제33조, 제3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일 결정,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5.「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56조, 제7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분할·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작성·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협의,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시범실시 지정요청,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

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8.「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 주택관리업자 교육

9.「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10.「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44조에 따른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장관에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의견 제출,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수립·시행·평가, 환경부장관에 대기환경규제지역 해제 요청, 휘발성 유기화합물 신고·접수

11.「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12.「악취방지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제14조, 제16

조의7, 제17조, 제20조, 제30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접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관리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악취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조업정지·과징금처분, 생활악취방지대책 수립·시행,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에게 보고·자료제출·검사요구, 악취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13.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법령상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14.「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3,제32조,제67조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수질관리조사, 수생태계 현황조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경작방식 변경과 휴경 등 권고,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교육

1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제3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등 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빛공해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제69조, 제83조, 제92조, 제100조, 제11조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관리, 측량업 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 반출 승인, 축적변경 승인, 측량업·수로사업·성능검사대행업자의 보고·조사, 등록취소 시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17.「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29조, 제39조, 제45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제출, 시 종합계획 수립,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보고·감독, 과태료 부과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의견 제출,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농공단지 지정

19.「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지역진흥산업계획의 수립,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농공단지 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농공단지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20..「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8조의4, 제26조에 따른 벤처집적시설 지정, 중기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운영보고 제출명령

22.「어촌·어항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및 지정협의, 지방어항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청취,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23.「온천법」 제5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보양온천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

24.「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24조의 문화지구 지정·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2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록사실 통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폐관신고 및 등록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등록취소 및 등록증 수납, 운영현황 및 등록취소사항 보고, 설립계획 승인취소 시 청문, 중요사항의 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인구 100만 이상의 시(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2조 관련)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6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6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행정[1]부시장 ·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 ·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표(제73조제6항 관련)

해당 시 · 도	행정(1)부시장 ·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 · 행정(2)부지사	비 고
서울특별시	기획 · 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	도시계획 · 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 · 방재분야 업무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 · 예산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평택시 · 안산시 · 과천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용인시 · 이천시 · 안성시 · 김포시 · 여주시 · 화성시 · 광주시 · 양평군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파주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시 · 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1.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되,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07 (044) 205 - 3311